사 업 명

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 (5152-30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중소벤처기업				110	118
명칭	창업 및 진흥기금	중소벤처기업부	중소기업정책실		산업·중소기업	창업 및 벤처
53	78日 天 신 ま/日				및 에너지	상업 및 벤서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
코드	5100	5152	301	
명칭	창업환경조성	창업기업지원융자(기금)	혁신창업사업화자금(융자)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0	0		

3. 지출계획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	202	3년	2024년	중감	
^የਬਰ	결산	당초(A)	수정	확정(B)	(B-A)	(B-A)/A
혁신창업사업화자	2,300,000	2,230,000	2,330,000	2,007,800	△222,200	△9.96
금(융자)	2,500,000	2,230,000	2,000,000	2,007,000	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

4. 사업목적

- (창업기반지원)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
- o (개발기술사업화)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o 법령상 근거 :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, 제67조,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

ㅇ 추진경위

- 1998.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
- 2005.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(기존 10억원)
- 2006.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(기존 3년미만)
- 2008. 1 부채비율 예외적용 기업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(기존 3년 미만)
- 2009. 1 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까지 확대(기존 5년 미만)
- 2010. 3 재창업자금(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) 신규 지원
- 2012.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(기존 7년 미만) 청년전용창업자금(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) 신규 지원
- 2014.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(청년전용창업자금, 재창업자금)
- 2014.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
- 2015.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(융자)의 내역사업으로 이관
- 2019.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
- 2020. 1 미래기술육성자금,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
- 2022.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
- 2023.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
- 2023.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(혁신창업사업화자금)

〈 국정과제 〉

- < 국정목표 2.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>
- 6. 중소·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
- ■(31번)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(중기부)
- (금융·수출·판로 패키지)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,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,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
- ■(32번)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
-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

6. 주요내용

ㅇ 총사업비 : 해당없음

ㅇ 사업기간 : '98년~ 계속

ㅇ 사업규모 : '24년 2조 78억원

ㅇ 사업시행방법 : 융자, 보조

ㅇ 사업시행주체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ㅇ 사업 수혜자 : 중소기업

o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·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4 계획안)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		중소기업	1조 7,958억원	정책자금기준금리△0.3%p	중소기업진흥에
청업기반지원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융자				관한 법률 제66조,
0 1/10/10	8/1				제66조, 제67조,
					제74조
		융자 중소기업 +보조		(융자)정책자금기준금리 (이차보전) 최대 5.5% 이내	중소기업진흥에
개발기술사업화	융자				관한 법률 제66조,
711 271 271 134	+보조				제66조, 제67조,
					제74조

7. 사업 집행절차

